

# 경쟁당국의 IPR Licensing Guideline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박 환 성

<p><b>I. 서론</b> ..... 1</p> <p><b>II. 미국, 유럽 및 일본의 IPR Licensing Guideline의 제정 배경</b> ..... 2</p> <p>1. 미국의 「지식재산권 라이선싱을 위한 반독점 가이드라인」(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 2</p> <p>2. 유럽의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EC 조약 제81조의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 of the EC Treaty to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 ..... 4</p> <p>3. 일본의 「지식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 금지법상의 지침」(知的財産の利用に關する獨占禁止法の指針) ..... 6</p> <p><b>III. 미국, 유럽 및 일본의 IPR Licensing Guideline의 비교</b> ..... 7</p> <p>1. 적용 대상 ..... 7</p> <p>    가. 미국 ..... 7</p> <p>    나. 유럽 ..... 8</p> <p>    다. 일본 ..... 8</p> <p>2. 관련 시장 ..... 9</p> <p>    가. 미국 ..... 9</p> <p>    나. 유럽 ..... 10</p> <p>    다. 일본 ..... 10</p>	<p>3. 라이선싱 제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 및 방법 ..... 11</p> <p>    가. 미국 ..... 11</p> <p>    나. 유럽 ..... 13</p> <p>    다. 일본 ..... 14</p> <p>4. 안전지대(Safe Harbor) ..... 14</p> <p>    가. 미국 ..... 14</p> <p>    나. 유럽 ..... 15</p> <p>    다. 일본 ..... 16</p> <p><b>IV. IPR Licensing이 문제되는 구체적 사례에 대한 미국, 유럽 및 일본의 IPR Licensing Guideline의 규율</b> ..... 16</p> <p>1. 끼워팔기 및 일괄실시허락 ..... 16</p> <p>    가. 미국 ..... 16</p> <p>    나. 유럽 ..... 17</p> <p>    다. 일본 ..... 17</p> <p>2. 라이선스 거절 ..... 18</p> <p>    가. 미국 ..... 18</p> <p>    나. 유럽 ..... 19</p> <p>    다. 일본 ..... 20</p> <p>3. 특허풀 및 크로스 라이선싱 ..... 21</p> <p>    가. 미국 ..... 21</p> <p>    나. 유럽 ..... 22</p> <p>    다. 일본 ..... 23</p> <p><b>V. 결론</b> ..... 24</p>
---	---

## I. 서론

지식재산권(IPR)에 대한 보호는 본질적으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동시에 경쟁 제한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공정거래법 또는 반독점법의 이념과 갈등 관계에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및 공정한 경쟁 보호라는 두 가지 이념을 상호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해서 각국의 경쟁당국에서는 IPR Licensing Guideline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 3. 31.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의 기본 원칙 및 구체적인 남용행위 유형을 제시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의 전부 개정안을 의결하여, 2010. 4. 7.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미국은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및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1995. 4. 6. 제정한 「지식재산권 라이선싱을 위한 반독점 가이드라인 (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을, 유럽은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EC 조약 81조 적용 지침(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 of the EC Treaty to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을, 일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 9. 8. 제정한 「지식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을 각각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IPR Licensing Guideline은 비슷한 이념을 추구하면서도 실제 현실에서 운용되는 내용이 상이한바, 이하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경쟁당국의 IPR Licensing Guideline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

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향후 IPR Licensing Guideline을 정비, 운용함에 있어 참고할 사항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II. 미국, 유럽 및 일본의 IPR Licensing Guideline의 제정 배경

### 1. 미국의 「지식재산권 라이선싱을 위한 반독점 가이드라인」(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미국은 1890년 셔먼법(Sherman Act)이 제정된 이후, 반독점법과 특허법이 상호 견제하는 과정을 거쳐 특허권 남용행위의 규제 법리가 발전하여 왔다. 셔먼법 제정 초기에는 지식재산권법이 반독점법에 우선한다는 것이 미국 법원과 경쟁당국의 확고한 입장이었으므로, 1910년대 초반까지는 특허권자가 관련 기술에 대한 라이선싱을 하면서 기타 포괄적인 거래 제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1931년 Standard Oil 사건<sup>1)</sup>에서 특허권 협정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부분적으로 경쟁촉진효과와 경쟁저해효과를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합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을 채택한 이후, 미국의 법원과 경쟁당국은 다양한 특허권 및 지식재산권 라이선싱과 관련된 사건에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였다.

---

1) Standard Oil Co. v. United States, 283 U.S. 174 (1931).

1952년 미국 의회는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을 하기도 하였으나, 1970년대 초 미국 법무부는 기존의 특허권 및 지식재산권 라이선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경쟁제한의 가능성이 높은 9가지 행위에 대해 반독점법상 “당연위법의 원칙”(Per se Illegal)을 적용하는 “Nine No Nos”<sup>2)</sup>를 채택하였고, 이로 인해 지식재산권의 행사는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이후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반독점 정책과 지식재산 정책의 조화를 추구하게 되면서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리성의 원칙”에 의해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법원과 경쟁당국의 태도가 변화되었고, 미국의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공동으로 1995. 4. 6. 「지식재산권 라이선싱을 위한 반독점 가이드라인」(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기본원칙, 관련 시장 분석 및 위법성 심사구조, 남용행위의 유형별 판단기준을 포괄적으로 제시

---

2) Nine No Nos에 해당하는 9가지 당연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실시허락자로부터 비특허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 ② 라이선싱 계약 개시 후 실시권자가 발명한 임의의 특허권에 대해 실시허락자에게 라이선스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Grantback)
- ③ 특허 상품의 재판매시 당해 특허 제품의 구매자를 제한하는 행위
- ④ 특허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실시권자의 거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 ⑤ 실시권자의 동의 없이 실시허락자가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여하지 않기로 실시권자와 합의하는 행위
- ⑥ 실시권자에 대해 패키지 라이선싱을 강요하는 행위
- ⑦ 라이선스받은 제품과 합리적으로 관련 되지 않은 ‘양(총 매출 로열티 포함)’을 기준으로 실시권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⑧ 상품의 제조방법(process)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한 실시허락자가 당해 특허에 대한 실시권자에 대해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 ⑨ 라이선스받은 제품의 판매시 실시권자로 하여금 특정한 가격 또는 최저 가격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계약에 부과되는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 경쟁촉진효과와 경쟁제한효과를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우에 한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규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권의 반독점 규제에 관한 3가지 일반 원칙을 채택하였다.

- ① 반독점법 적용 원칙을 일반 재산권과 지식재산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② 지식재산권의 존재 자체가 시장지배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지식재산권 라이선싱은 기업들로 하여금 무한적인 생산 요소들의 결합을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쟁촉진효과를 갖는다.

## 2. 유럽의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EC 조약 제81조의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 of the EC Treaty to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

유럽사법재판소(ECJ)와 유럽집행위원회(EC)는 기술이전계약에 제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 경쟁법의 주요 조항인 유럽공동체설립조약(이하 'EC 조약') 제81조(경쟁저해행위의 금지)<sup>3)</sup> 및 제82조(지배적

---

3) Article 81(현 EU 조약 제101조)

1. The following shall be prohibited as incompatible with the common market: all agreements between undertakings, decisions by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and concerted practices which may affect trade between Member States and which have as their object or effect the prevention, restriction or distortion of competition within the common market, and in particular those which:
  - (b) directly or indirectly fix purchase or selling prices or any other trading conditions;
  - (c) limit or control production, markets, technical development, or investment;

지위 남용금지)<sup>4)</sup>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즉, 기술이전계약 체결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EC 조약 제81조) 또는 지배적 지위를 가진 지식재산권자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시권자들에게 차별적인 조건이나 지나치게 높은 로열티를 부과하는 행위(EC 조약 제82조)는 각각 EC 조약 제81조 및 제82조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다만, EC 조약 제81조 제3항은 기술이전계약이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에는 EC 조약 제81조 제1항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에 따라 기술이전일괄면제규정(Technology Transfer Block Exemption Regulation, TTBER<sup>5)</sup>)이 일괄면제(block exemption)를 규정

- 
- (d) share markets or sources of supply;
  - (e) apply dissimilar conditions to equivalent transactions with other trading parties, thereby placing them at a competitive disadvantage;
  - (f) make the conclusion of contracts subject to acceptance by the other parties of supplementary obligations which, by their nature or according to commercial usage, have no connection with the subject of such contracts.
2. Any agreements or decisions prohibited pursuant to this Article shall be automatically voi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may, however, be declared inapplicable in the case of:
    - any agreement or category of agreements between undertakings;
    - any decision or category of decisions by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 any concerted practice or category of concerted practices,
 which contributes to improving the 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goods or to promoting technical or economic progress, while allowing consumers a fair share of the resulting benefit, and which does not:
    - (a) impose on the undertakings concerned restrictions which are not indispensable to the attainment of these objectives;
    - (b) afford such undertakings the possibility of eliminating competition in respect of a substantial part of the products in question.
- 4) Article 82(현 EU 조약 제102조)
- Any abuse by one or more undertakings of a dominant position within the common market or in a substantial part of it shall be prohibited as incompatible with the common market insofar as it may affect trade between Member States.
- Such abuse may, in particular, consist in:
- (a) directly or indirectly imposing unfair purchase or selling prices or other unfair trading conditions;
  - (b) limiting production, markets or technical development to the prejudice of consumers;
  - (c) applying dissimilar conditions to equivalent transactions with other trading parties, thereby placing them at a competitive disadvantage;
  - (d) making the conclusion of contracts subject to acceptance by the other parties of supplementary obligations which, by their nature or according to commercial usage, have no connection with the subject of such contracts.
- 5) TTBER(Technology Transfer Block Exemption Regulation)은 기술이전계약의 범주에 관한 EC

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2004. 4.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EC 조약 제81조의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 of the EC Treaty to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지침을 제시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술이전일괄면제규정(TTBER)의 적용 및 기술이전일괄면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EC 조약 제81조의 적용에 관한 심사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다.

### 3. 일본의 「지식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知的財産の利用に關する獨占禁止法の指針)

일본의 독점금지법(私的獨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關する法律)은 미국의 주도로 1947년에 제정되었으며, 이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일본은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대해 1968년 「국제적 기술도입 계약에 관한 불공정거래 인정기준」을 제정하고 이 인정기준을 1989년 「특허·노하우 라이선싱 계약에서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규정에 관한 운영기준」으로 변경하면서, 행위 유형을 ① 원칙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되는 경우, ③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분류하였고, 이 중 ③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 제한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자 또는 실시권자의 관련시장에서의 지위, 관련시장의 상황 등

---

조약 제81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한 위원회 규칙(Commission Regulation (EC) No 773/2004)을 의미한다.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합리성의 원칙을 채용하였다.

이 운영기준은 1999년 「특허·노하우 라이선싱 계약에 관한 독점금지법 상의 지침」으로 변경되면서, 위 3가지 행위 유형 외 ④ 불공정한 거래 방법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가 추가되었다.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 9. 8. 지식재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활동이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의 이용과 관련되는 제한 행위에 대해서 독점금지법 상의 적용을 한층 명확히 하기 위해서 「특허·노하우 라이선싱 계약에 관한 독점금지법 상의 지침」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지식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知的財産の利用に關する獨占禁止法の指針)을 제정하였다. 본 지침에서는 여러 지식재산권 행사 유형을 세분화하여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 III. 미국, 유럽 및 일본의 IPR Licensing Guideline의 비교

#### 1. 적용 대상

##### 가. 미국

미국의 반독점 가이드라인은 특허권, 저작권, 영업비밀 및 노하우에 관한 라이선싱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상표권에 대한 라이선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위 가이드라인이 제품의 차별화 문제가 아닌 기술이전 및 혁신 관련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sup>6)</sup>



## 나. 유럽

유럽의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은 기술의 이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만 적용된다. 여기에서 기술이라 함은 특허 및 특허 출원, 실용신안 모델 및 출원, 디자인권, 식물재배권, 반도체 제품의 표면 형태, 보완적 보호증서를 획득할 수 있는 의료 제품,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노하우<sup>6)</sup>를 말한다.<sup>8)</sup> 따라서 위 가이드라인은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에 관한 계약 또는 상표권이나 저작권과 같은 기타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에 관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sup>9)</sup> 다만, 기술이전계약이 위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술의 이전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기타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까지 부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타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도 위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된다.<sup>10)</sup>

## 다. 일본

일본의 지식재산이용지침은 지식재산 중 기술의 이용에 관한 제한 행위를 그 규율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기술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 배치에 관한 법률, 종묘법, 저작권법 및 의장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술 및 노하우로서 보호되는 기술<sup>11)</sup>을 의미한다. 위 지침에 따르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술은

6) 미국의 반독점 가이드라인 제1.0조.

7) 노하우란 기밀적이고 실제적이며 확인된 존재로서 경험과 시험의 결과로 얻은 특허 받지 않은 실제적 정보의 집합을 의미한다(유럽의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 제47).

8) 유럽의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 제46.

9) 유럽의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 제49.

10) 유럽의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 제50.

11) 노하우란 사업자 스스로 보호·관리하는 공지되지 않은 기술적 지식, 경험을 의미한다(일본의 지식재산이용지침 제1-2).

프로그램저작물을 의미한다고 하고, 그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에서 상표법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sup>12)</sup>

## 2. 관련 시장

### 가. 미국

미국의 반독점 가이드라인은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싱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3개의 시장개념을 제시한다. ① 반독점법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상품 시장(goods or services markets), ② 기술이 제품처럼 거래되는 기술 시장(technology markets), ③ 연구개발경쟁이 벌어지는 기술혁신 시장(research and development innovation markets)이 그것이다. 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라이선싱 계약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수량, 품질 및 종류에 반경쟁적 효과를 미치는 경우, 라이선싱 계약의 경쟁적 효과는 상품 시장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으나, 지식재산이 사용되는 상품과 별도로 그 지식재산권에 대해 시장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라이선싱 계약의 경쟁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술 시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나아가 라이선싱 계약이 새롭거나 개량된 상품 또는 공정을 개발하는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술 혁신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게 된다고 한다.<sup>13)</sup> 한편, 위 가이드라인은 기술 시장 및 기술 혁신 시장에서 시장참가자의 경쟁적 중요성을 평가함에 있어 시장점유율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나, 시장점유율에 관한 데이터가 이용가능하지

12) 일본의 지식재산이용지침 제1-2.

13) 미국의 반독점 가이드라인 제3.2조.

않거나 시장참가자들의 경쟁적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참가자들의 경쟁적 중요성에 대한 구매자들의 평가와 시장참가자의 평가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sup>14)</sup>

## 나. 유럽

유럽의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술은 제품이나 생산 공정에 통합되는 자원이므로 라이선싱 계약의 경쟁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술 시장은 물론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시장, 즉 제품 시장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다.<sup>15)</sup> 나아가 위 가이드라인은 관련시장이 정의되면 시장점유율이 시장 내 시장참가자의 상대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으나, 시장점유율이 이용가능한 기술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술이전계약의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 대체기술의 수와 기타 대체기술의 수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다.<sup>16)</sup>

## 다. 일본

일본의 지식재산이용지침에 따르면, 기술의 이용에 관한 제한행위에 대하여 독점금지법 상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한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따라 거래되는 기술의 시장 및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공급되는 제품의 시장, 그 밖의 기술 또는 제품의 시장을 확정하여 경쟁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한다.<sup>17)</sup> 기술 시

14) 미국의 반독점 가이드라인 제3.2조.

15) 유럽의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 제19, 20.

16) 유럽의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 제23, 24.

17) 일본의 지식재산이용지침 제2-2-(2).

장 및 제품 시장의 확정은 기본적으로는 기술 또는 해당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각각에 대한 수요자에 의한 대체성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진다.<sup>18)</sup> 한편, 위 지침에 따르면 대상시장에서 시장참가자가 차지하는 지위는 주로 시장점유율에 의해서 판단하나, 기술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해당 기술을 이용한 제품 시장에서의 점유율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sup>19)</sup>

### 3. 라이선싱 제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 및 방법

#### 가. 미국

미국의 반독점 가이드라인은 당연위법(unlawful per se)으로 간주되는 가격협정, 수량제한협정, 시장분할협정, 집단적 거래거절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외에는 경쟁촉진효과와 경쟁저해효과를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합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에 의해 위법성을 평가한다.<sup>20)21)</sup>

반경쟁적 효과의 분석과 관련하여, 위 가이드라인은 라이선싱 계약의 당사자들이 수평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서의 제한 사항들이 당사자들 사이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분석하여야 하고, 라이선싱 계약의 당사자들이 수직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서의 제한 사항들이 각 당사자가 속한 시장 또는

18) 일본의 지식재산이용지침 제2-2-(3).

19) 일본의 지식재산이용지침 제2-3.

20) 미국의 반독점 가이드라인 제3.4조.

21) Federal Trade Commission v. Indianan Federation of Dentists, 476 U.S. 447 (1986); NCAA v. Board of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Oklahoma, 468 U.S. 85 (1984); Broadcast Music, Inc. v. Columbia Broadcasting System, Inc., 441 U.S. 1 (1979).

다른 관련시장에서 수평적 관계에 있는 회사들 사이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분석하여야 한다고 한다.<sup>22)</sup> 나아가 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독점적 라이선스(exclusive license)는 실시권자들이 수평적 관계에 있거나 실시허락자와 실시권자가 수평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반독점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비독점적 라이선스의 경우에도 실시허락자가 타인에게 라이선스할 가능성이 없거나 그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구조라면 독점적 라이선스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라이선싱 계약에서 실시권자에 의한 경쟁 기술의 라이선싱, 판매, 배포 및 사용이 금지되는 독점적 거래(exclusive dealing)의 경우, 중요한 자원에 대한 경쟁자들의 접근을 봉쇄하거나 경쟁자들이 중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경쟁자들의 산출물의 가격을 증가시키거나 수량을 감소시키는 등 반경쟁적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라이선스된 기술 또는 그 기술을 개발하거나 마케팅하도록 장려하는 등 친경쟁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sup>23)</sup>

친경쟁적 효율의 고려와 관련하여, 위 가이드라인은 라이선싱 계약의 제한 사항이 반경쟁적인 효과를 가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그러한 제한 사항이 친경쟁적인 효율성을 얻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하고, 만일 그 제한 사항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면 친경쟁적 효율과 반경쟁적 효과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한다. 위 가이드라인은 제한 사항이 친경쟁적 효율을 얻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적이고 중

---

22) 미국의 반독점 가이드라인 제4.1.1조.

23) 미국의 반독점 가이드라인 제4.1.2조.

대하게 덜 제한적인 대안들(practical and significantly less restrictive alternatives)의 존부, 제한 사항의 존속기간, 라이선싱 계약의 해지 조건 또는 갱신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반경쟁적 효과와 친경쟁적 효율의 비교형량은 필연적으로 정성적(qualitative)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sup>24)</sup>

## 나. 유럽

유럽의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반경쟁적 라이선싱 계약은 반경쟁적 효과를 능가하는 친경쟁적 효율을 창출할 수도 있으므로, EC 조약 제81조 제1항의 예외로 규정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경쟁적 효과와 친경쟁적 효율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i) 라이선싱 계약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야 하고, (ii) 경쟁 제한이 친경쟁적 효율을 얻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어야 하며, (iii) 소비자들이 친경쟁적 효율로부터 공정한 이익을 배분받아야 하고, (iv) 라이선싱 계약이 관련 제품의 실질적 부분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경쟁을 제거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고 한다.<sup>25)</sup> 또한 위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으로 경쟁자간 라이선싱 계약이 비경쟁자간 라이선싱 계약보다 경쟁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 간의 경쟁(동일한 기술에 관한 실시권자 간의 내부 경쟁)이 경쟁기술을 사용하는 기업 간의 경쟁(상호 기술 경쟁)에 중요한 보완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예컨대, 실시권자간의

24) 미국의 반독점 가이드라인 제4.2조.

25) 유럽의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 제18, 146.

내부적인 기술 경쟁은 관련 기술이 통합된 제품의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이익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창출할 뿐만 아니라 경쟁기술을 사용하는 기업 간의 경쟁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sup>26)</sup>

#### 다. 일본

일본의 지식재산이용지침에 따르면,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제한의 내용 및 형태, 해당 기술의 용도나 유력성, 시장별 당사자 간의 경쟁 관계의 유무, 시장에서 당사자가 차지하는 점유율, 순위 등 지위, 시장 전체의 상황(경쟁자 수, 시장집중도, 거래되는 제품의 특성, 차별화의 정도, 유통경로, 신규 진입의 난이성 등), 제한에 대한 합리적 이유의 유무, 연구 개발 의욕과 라이선스 의욕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고 한다.<sup>27)</sup>

### 4. 안전지대(Safe Harbor)

#### 가. 미국

미국의 반독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라이선싱 계약의 제한 조항이 외관상 반경쟁적이지 않고, 라이선싱 계약의 각 당사자가 차지하는 관련시장의 점유율 합계가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기술 시장이나 기술 혁신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경쟁기술이나 경쟁사업자가 4 이상 존재하는 경우), 해당 제한 사항

---

26) 유럽의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 제26.

27) 일본의 지식재산이용지침 제2-3.

은 안전지대(Safety Zone)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반독점법 위반 제조소로부터 면제된다고 한다.<sup>28)</sup> 안전지대는 라이선싱 계약이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러한 혁신과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 나. 유럽

유럽의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술이전일괄면제규정 제3조가 경쟁제한적 라이선싱 계약의 일괄면제 사유로서 최저 시장점유율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경쟁자간 계약의 경우 시장점유율의 최저치는 20%이며, 비경쟁자간 계약의 경우 시장점유율의 최저치는 30%라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라이선싱 계약의 당사자들이 비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시장에 대한 각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안전지대에 속하게 되고, 라이선싱 계약의 당사자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시장에 대한 당사자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당해 계약이 안전지대에 속하여 반독점 위반 제조소로부터 면제된다. 또한 최소 시장점유율 기준은 기술 시장 및 관련 제품 시장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고, 라이선싱 계약이 어떤 관련 시장에서 최소 시장점유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시장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의 일괄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sup>29)</sup>

---

28) 미국의 반독점 가이드라인 제4.3조.

29) 유럽의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 제65, 69.



#### 다. 일본

일본의 지식재산이용지침에서는, 기술의 이용에 관한 제한행위의 내용이 해당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점유율, 판매지역 또는 판매처를 제한하거나 연구개발활동을 제한하거나 또는 개량기술의 양도의무·독점적 라이선스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제품 시장에 있어서의 점유율의 합계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감소효과가 경미하다고 한다. 다만, 제품시장의 점유율을 산출할 수 없거나 그 점유율을 근거로 기술 시장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 이외에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이용가능한 대체기술에 대한 권리가 있는 자가 4 이상 존재하면 경쟁감소효과가 경미하다고 한다.<sup>30)</sup>

### IV. IPR Licensing이 문제되는 구체적 사례에 대한 미국, 유럽 및 일본의 IPR Licensing Guideline의 규율

#### 1. 끼워팔기 및 일괄실시허락

##### 가. 미국

끼워팔기 계약은 구매자가 끼워팔리는 제품(tied product)을 구매한 다거나 적어도 다른 공급자들로부터 끼워팔리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데 합의하는 조건으로 끼워팔리는 제품(tying product)을 구매하는 계약을 의미한다.<sup>31)</sup> 하나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라이선스하는

30) 일본의 지식재산이용지침 제2-5.

실시권자에게 또 다른 지식재산권이나 상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할 것을 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i) 판매자가 끼워파는 제품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것, (ii) 해당 계약이 끼워팔리는 제품의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및 (iii) 해당 계약의 친경쟁적 효율이 반경쟁적 효과보다 크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불법적인 끼워팔기로 판단되고 있다.<sup>32)</sup> 일괄실행허락은 하나 또는 일군의 관련 라이선스에서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라이선스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하나의 제품에 대한 라이선싱을 할 때, 또 다른 별개의 제품에 대한 라이선싱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라면 끼워팔기 계약의 한 형태로 평가된다.<sup>33)</sup>

## 나. 유럽

유럽의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에서는 끼워팔기 및 번들링<sup>34)</sup>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시장참가자들의 시장점유율이 위 가이드라인 상의 최저치를 초과하는 경우, 끼워팔기 또는 번들링에 대해서는 일괄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그 반경쟁적 효과와 친경쟁적 효율을 비교형량하여 불법 여부를 판단한다고 한다.<sup>35)</sup>

## 다. 일본

일본의 지식재산이용지침은 일괄실행허락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

31) Eastman Kodak Co. v. Image Technical Services, Inc., 112 S. Ct. 2072, 2079 (1992).

32) 불법적 끼워팔기로 판단한 사례: United States v. Paramount Pictures, Inc., 334 U.S. 131, 156-58 (1948); International Salt Co. v. United States, 332 U.S. 392 (1947).

33) 미국의 반독점 가이드라인 제5.3조.

34) 번들링이라 함은 둘 이상의 기술을 한꺼번에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 또는 기술과 제품을 한꺼번에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5) 유럽의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 제192.

다. 실시허락자가 실시권자에게 라이선스를 요구받은 기술 이외의 기술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라이선스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실시권자가 요구하는 기술의 효용에 대한 보증, 안전성의 확보, 비밀누설의 방지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정도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일괄실시허락의 필요성이 없거나 그 필요 범위를 넘어 라이선스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실시권자의 기술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고, 경쟁기술이 배제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한다고 한다.<sup>36)37)</sup>

## 2. 라이선스 거절

### 가. 미국

미국 판례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은 배타적인 권리로서 지식재산권자가 그 지식재산권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합법성이 강력하게 추정되므로, 지식재산권자가 특정사업자에게 관련 기술을 라이선스해 주어야 할 일반적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다고 하고 있다.<sup>38)</sup> 다만, 미국 판례이론은 특허권자에게 라이선스를 강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 관한 이른바 ‘필수설비이론(Essential Facilities Doctrine)’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i) 독점사업자가 필수설비를 통제하고 있고, (ii) 경쟁사업자가 실질적·

36) 일본의 지식재산이용지침 제4-5-(4).

37) 평성10년 12월 14일 심결: 소프트웨어 업체가 거래처 PC 제조 판매업자에 대해 (i) 스프레드시트(Spread Sheet) 소프트웨어를 PC 본체에 탑재 또는 동봉하여 출하할 권리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하면서, 부당하게 워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를 PC 본체에 탑재 또는 동봉시킨 경우, (ii)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 및 워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를 PC 본체에 탑재 또는 동봉하여 출하할 권리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하면서 부당하게 스케줄 관리 소프트웨어를 함께 탑재 또는 동봉시킨 경우, 각각 독점금지법 제19조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38) Continental Paper Bag Co. v. Eastern Paper Bag Co., 210 U.S. 405 (1908).

합리적으로 필수설비에 접근할 수 없으며, (iii) 경쟁사업자가 설비를 복제 및 대체하는 것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iv) 독점사업자가 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 경쟁사업자에게 필수설비의 이용을 거절하는 경우, 위법한 라이선스 거절이 된다.<sup>39)</sup> 나아가 In re Independent Service Organizations Antitrust Litigation 사건에서, 법원은 사기에 의해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특허침해소송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경우, 특허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시장독점을 위해 거래거절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sup>40)</sup>

## 나. 유럽

EU 최고법원인 ECJ는, 지식재산권의 존재 자체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라이선스 거절 자체는 일반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i) 기존 지식재산권자들이 제공하지 않지만 시장에 수요가 존재하는 새로운 상품을 마케팅함에 있어 라이선스가 거절된 상품이 필수불가결하고, (ii) 라이선스 거절의 정당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iii) 이러한 거절로 인해 지배적 사업자가 2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거절이 시

39) MCI Communications Corp. v. AT&T, 708 F.2d 1081 (7th Cir.) (1983).

40) In re Independent Service Organizations Antitrust Litigation (CSU, L.L.C. v. Xerox Corp.) (2000): Xerox Corp.은 자사 복사기의 부품을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하고, 복사기에 대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던 독립 서비스업체들에게는 그 부품에 대한 특허권 및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해당 부품의 판매를 거절하였는데, 그 결과 다수의 서비스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Xerox Corp.의 거래 거절은 특허권이나 저작권의 보호 범위 내에 있으며 거래의무를 인정할 만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라이선스 거절의 반독점법 혐의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는 비판이 있다(FTC-DOJ, Antitrust Enforce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moting Innovation and Competition, 2007, p. 22).

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에 관한 EC 조약 제82조(현 EU조약 제 102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sup>41)</sup>

#### 다. 일본

일본의 지식재산이용지침에 따르면, 특정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자가 다른 사업자에 대해 해당 기술의 이용에 대해 라이선스를 하지 않는 행위(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고액의 라이선스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또는 라이선스를 허락하지 않고 해당 기술을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해당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로서 통상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위가 지식재산권의 취지 및 목적에 반한다고 인정되고,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배제하는 행위로서 독점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위 이용지침은 이러한 예로서, (i) 특허권을 형성하고 있는 사업자가 신규 참가자나 특정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라이선스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함으로써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sup>42)</sup> (ii) 다수의 사업자가 제품 시장에서 사업 활동의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에 대하여

---

41) Commission Decision 1989/205/EEC (IV/31.851-Magill TV Guide/ITP, BBC and RTE), OJ L. 78 (1989): ITP, BBC, RTE의 3개 방송사는 자체 프로그램 편성표를 뉴스를 통해 제공하여 왔는데, Magill이 각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편성표를 신규 제공하고자 하자 프로그램 리스트 제공을 거부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는 방송사에 저작권 강제실시를 명하였고, 최고법원인 ECJ에서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예외적인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Mark Furse, *Competition Law of the UK and EC*(5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 398).

42) 평성9년 8월 6일 심결: 파칭코기를 제조하는 회사 등이 파칭코기 제조에 관한 특허 등을 소유한 결과, 그에 대한 라이선스 없이는 파칭코기를 제조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서 파칭코기 제조 특허권자들이 해당 특허를 연맹에게 위탁하고,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규 시장 진입을 방해한 사안에서 독점금지법 제3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일부 사업자가 해당 기술에 대해 권리를 권리자로부터 취득한 다음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기술의 라이선스를 거절하여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iii) 일정한 기술시장 또는 제품시장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업자가 경쟁자가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매입하고, 자신은 이용하지 않으면서 경쟁자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거절함으로써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iv) 다수의 사업자가 제품의 규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 자기가 권리를 가지는 기술이 규격으로 채택되었을 경우의 라이선스 조건을 속이는 등 부당한 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기술을 규격에 채택시키고, 규격이 확정되어 다른 사업자가 해당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다음에 라이선스를 거절하여 해당 규격의 제품 개발이나 제조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다.<sup>43)</sup>

### 3. 특허풀 및 크로스 라이선싱

#### 가. 미국

미국의 반독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크로스 라이선싱(cross-licensing) 또는 풀링(pooling) 계약은, 상호 라이선스하거나 제3자에게 라이선스라는 서로 다른 지식재산권의 두명 이상의 소유자들 간의 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은 보완적인 기술을 통합하거나 거래비용을 절감하거나 이용발명관계를 해소하거나 값비싼 침해소송을 회피함으로써 친경쟁적인 효율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풀

43) 일본의 지식재산이용지침 제3-1-(1).

링 계약에서 집합적인 가격 또는 생산량 제한들은, 만약 그 제한사항들이 참가자들간 경제 활동의 효율 향상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나아가 크로스 라이선싱이나 풀링 계약이 가격고정이나 시장분할을 완성시키는 메커니즘이 될 때에는 당연위법의 법리에 따라 위법이 된다.<sup>44)</sup> 지식재산권의 크로스 라이선싱을 포함하는 화해는 소송을 회피하는 효율적 수단일 수 있으나, 그러한 크로스 라이선싱이 수평적 경쟁자들 간에 성립되어 화해의 효과로 크로스 라이선싱이 없을 때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자였을 회사들 간에 경쟁이 감소된다면 위법으로 될 수 있다.<sup>45)</sup> 또한 크로스 라이선싱 및 풀링 계약은 일반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두에게 개방될 필요가 없으나, 시장지배력을 갖는 당사자들 간의 크로스 라이선싱과 풀링 계약으로부터의 배제는 경우에 따라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될 수 있다.<sup>46)</sup> 일반적으로 경쟁기술간 풀링 계약이나 크로스 라이선싱 계약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만약 (i) 제외된 회사가 그 라이선스된 기술이 통합된 상품에 대한 관련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아니고, (ii) 풀 참가자들이 관련 시장에서 집합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작지 않는 경우라면, 그러한 배제가 반경쟁적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sup>47)</sup>

## 나. 유럽

44) United States v. New Wrinkle, Inc., 342 U.S. 371 (1952).

45) United States v. Singer Manufacturing Co., 374 U.S. 174 (1963).

46) Northwest Wholesale Stationers, Inc. v. Pacific Stationery & Printing Co., 472 U.S. 284 (1985).

47) 미국의 반독점 가이드라인 제5.5조.

유럽의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술 풀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기술 풀 참가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라이선스된 기술 패키지를 취합하는 협정으로 정의된다. 구조적 관점에서 볼 때, 기술 풀은 제한된 수의 당사자 간 간단한 협정 형태를 취하거나 공유된 기술에 대한 실시허락 기업이 별개의 업체에게 위탁한 상세한 기업 협정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술 풀에 대한 반경쟁적 위험과 친경쟁적 효율의 가능성은 공유된 기술 간의 관계와 기술 풀 외부의 기술과의 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하면서, 특히 풀을 구성하는 기술을 대체기술과 보완기술, 그리고 필수 기술과 비필수 기술로 구분하여 기술 풀의 경쟁에 대한 효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sup>48)</sup>

#### 다. 일본

일본의 지식거래이용지침에 따르면, 특허풀이란 특정 기술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복수의 사용자가 각각 보유하는 권리 또는 해당 권리에 대하여 라이선스할 권리를 일정한 기업체나 조직체에 집중하여, 해당 기업체나 조직체를 통해 특허풀의 구성원 등이 필요한 라이선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특허 풀은 사업활동에 필요한 기술의 효율적 이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술 시장에서 대체 관계에 있는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자들 사이에서 각각 보유하는 권리에 대해 특허 풀을 통하여 라이선스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특허 풀 참가자들이 라이선스 조건을 공동으로 결

48) 유럽의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 제210-234.



정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사업자가 풀에 속하는 기술의 개량을 서로 제한하거나 라이선스를 하는 상대방을 서로 제한하는 행위는 해당 기술의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 제한에 해당한다.<sup>49)</sup>

## V.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은 지식재산권의 넓은 보호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유럽은 경쟁 보호에 치중하고 있어 IPR Licensing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를 갖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시각을 갖고 있다. 2010. 4. 7.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은 외국사업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지침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특허풀, 기술표준, 특허소송남용 등 비교적 새롭게 인식되어 문제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위 심사지침은 미국, 유럽 등의 지침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바, 이는 향후 연구 또는 사례의 축적을 통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의 심사지침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그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

49) 일본의 지식재산이용지침 제3-2-(1).